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식물검역을 받아야 할 물품에 대한 검역 누락을 방지하고자 식물을 수입할 경우 우편물, 탁송품의 외부 포장과 상업서류에 수입자가 식물명을 기재하도록 함(안 제12조제10항 신설).
- 국내로 불법 반입된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불법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상기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한 양도·유통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의2 신설).
-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가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을 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함(안 제41조제2항제2호 개정).
- 무역항·공항 등의 시설관리자로 하여금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식물검역 정보를 안내하도록 하고, 선박 또는 항공기 운송인에게 승객 및 승무원을 대상으로 식물검역 정보에 관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45조의4 신설).
- 탁송업자의 신고의무 규정에 맞추어 과태료 부과시기를 명확하게 하여 집행상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식물검역관의 소독·폐기 명령

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상 미비된 사항을 정비함(안 제50조제3항제3호의3).

II. 검토 의견

1. 위임 규정 마련(안 제13조의2제3항)

개정안 제13조의2제1항은 현행법 제1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품,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입제한된 식물등 및 제12조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한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금지품등”으로 규정하고, 금지품등을 양도, 유통, 유통 목적의 운반 또는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개정안의 같은 조 제2항은 식물검역기관의 장이 금지품등을 보유한 자에게 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고, 안 제47조제6호의 2는 그 조치명령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¹⁾

개정안 제13조의2제2항은 개별 행정법상 처벌 규정의 구성요건에 대한 규정임에도 조치명령의 대상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식물검역기관의 장이 명할 수 있는 조치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 그러한 조치명령이 있는 경우 어느 기한 내에 명령을 이행하여야 벌칙의 대상이 되지 않는지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와 같이 범죄의 구성요건과 그에 대한 형벌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1)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략)

6의2.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경우라 하더라도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은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어야 함.²⁾

따라서 행정청의 조치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³⁾ 시정명령에 대한 사항을 부령으로 위임함으로써 국민이 형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예측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마련함.

[안 제13조의2제3항에 대한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13조의2(금지품등의 유통 금지 등)	제13조의2(금지품등의 유통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 등(이하 “금지품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유통(유통을 목적으로 운반 또는 보관하	① ----- ----- ----- -----

2) 2006. 5. 11. 선고 2006도920

3) 「폐기물관리법」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명령대상자”라 한다)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 9.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조치명령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제6호 및 제1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23.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측정기기의 부착 등)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측정기기가 기준에 맞게 운영·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9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지품. 다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위험분석을 마친 금지품은 제외한다. 2.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입제한된 식물등 3. 제12조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한 식물검역대상물품 4. 제1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목재포장재 5. 제13조제1항에 따른 격리재배 검역을 받지 아니한 격리재배대상식물 ②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금지품등을 보유한 자에게 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신 설)	----- -. 1. -----. --, -- ----- ----- -----. 2. ----- ----- 3. ----- ----- 4. ----- ----- 5. ----- ----- - ② ----- ----- ----- -. ③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세부 종류 및 기한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

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주서본 참조).

(전문위원 최 기 도)